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9
----------	-----

2022년 11월 2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9월 26일, 박춘선 의원 외 32명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21일

다. 상정일자: 제31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년 11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춘선 의원)

가. 제안이유

- 민간에서 전광판, 조명 등의 대중 표출시설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고농도 발생 시 상황 전파와 시민행동 요령 안내, 미세먼지 저감 홍보 등 서울시 대기질 개선과 피해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활동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골자

- 미세먼지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민간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피재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협회 등 민간에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 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 사업은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민간(개인 또는 법인·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4조와 같이 민간 홍보사업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 별다른 의견은 없음.

<지방보조금의 교부사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미세먼지 저감 홍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 협회 등 민간에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4조(미세먼지 저감 홍보 등의 지원)</u> <u>시장은 기업, 협회 등 민간에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